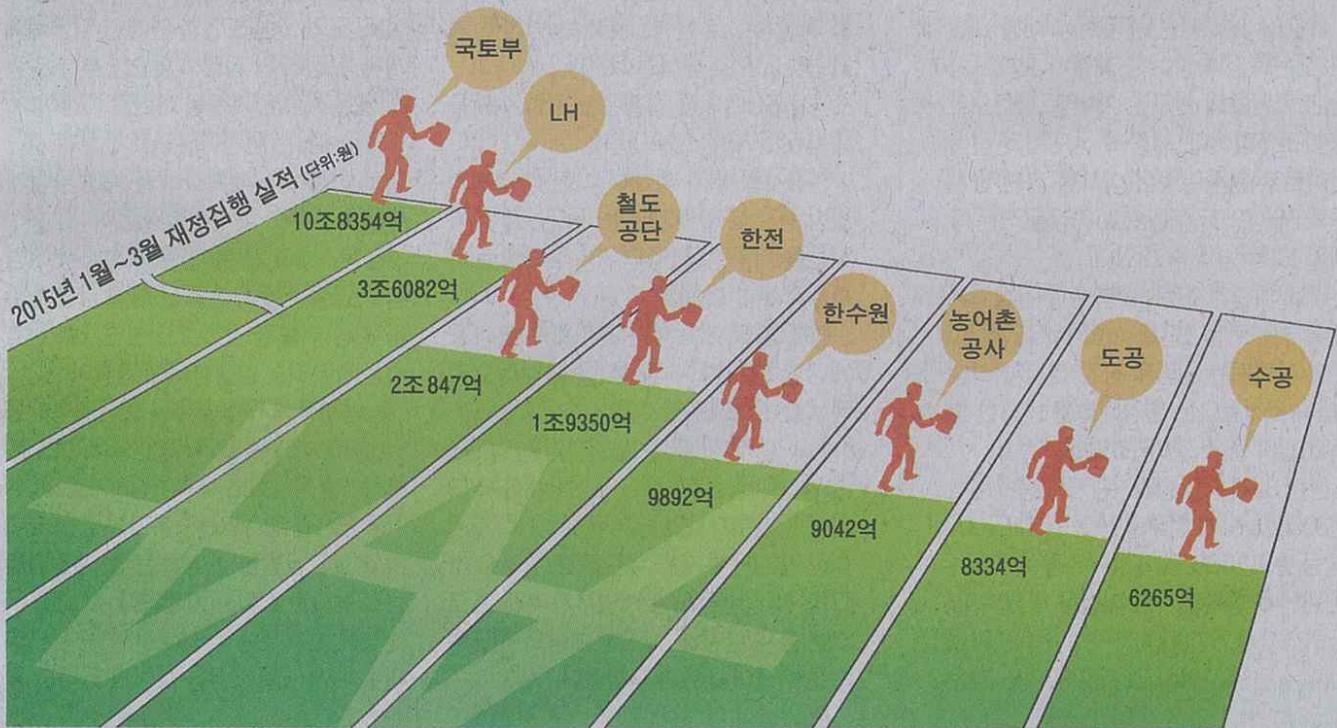


SOC 예산집행 ‘속도’ 붙었다

올 들어 지지부진했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대규모 SOC 투자를 맡고 있는 부처와 발주기관의 재정 집행률이 평균치를 밑돌다가 지난달 들어 일제히 증가폭을 확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정집행 실적은 5조2994억원으로 전월 대비 70.8% 증가했다. ▶관련기사 2면



국토부는 올 1월 2조4329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이후 2월 들어 전월보다 30% 가량 많은 3조103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중앙부처의 평균 재정 집행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5조원을 웃도는 재정을 집행하며 부진을 다소 만회했다.

전월에 재정 투입이 전무했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건설에 지난 한달 동안 각각 8878억원, 960억원을 썼고 전월까지 7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하천정비지원에도 무려 4215억원을 투입했다.

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사용한 예산은 각각 2800억원, 862억원으로 전월(1684억원·768억원) 대비 26.3%, 12.2%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는 물론 발주기관의 재정집행에도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다.

중앙부처 평균 밑돌던 국토부
지난달 5조2994억 집행
전월보다 70.8%나 증가
LH·수공 등 서서히 확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조4097억원 규모의 예산을 건물공사비와 조성비 등에 사용했다.

올 1월 1조103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서 2월 들어 1조952억원으로 예산 집행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28.7% 늘어나며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달 실적은 전월(4238억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1조2334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전월(7826억원)보다 41.1% 증가한 1

조106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월(1455억원)의 5배를 웃도는 7386억원 규모의 예산을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에 사용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과 발전시설 보강 등에 전월(2416억원) 대비 124.1% 증가한 5414억원을 투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달 집행 규모가 4697억원으로 전월(3251억원)보다 44.5% 증가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전월(694억원)의 6배에 가까운 385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와 발주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재정집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상반기 중 59% 조기집행 추진”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확장적 재정운용 기초 재확인

지나달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을 크게 확대한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59% 이내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초 SOC 예산 집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규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발주기관들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면서 SOC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롭게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7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디딤돌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 마련 지원으로 전세에서 매매 수요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핵심분야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달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SOC 예산 확대와 조기집행, 부동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건축·토목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부진한 것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예외 남발’ 공정성 훼손... ‘누더기’된 건산법 재정비 시급

글심는 순서

- <상> 열악길등 축설시간 국토부
- <중> 오락가락 건설산업정책
- <하> 법기본개념으로 돌아가야

“예외없는 규칙은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예외를 늘렸다면 규칙이 무너진다.”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논란에 대한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의 일침이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업역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건산법은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다.

건산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통해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한다. 하는 일이 다르니 등록조건도 다르다. 종합건설업은 5개 업종별 기술자 5~12인 이상, 자본금 5억~24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25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기술자 또는 기능자 2~5인 이상, 자본금 2억~6억원 이상이 최소 기준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칙에 예외를 하나둘씩 늘려가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우선 2008년부터 종합, 전문 간 겸업제

발주자 선택권 아닌 업역 갈등만 부추기고 개별 법령과도 충돌 잦아

지침만 있는 업무범위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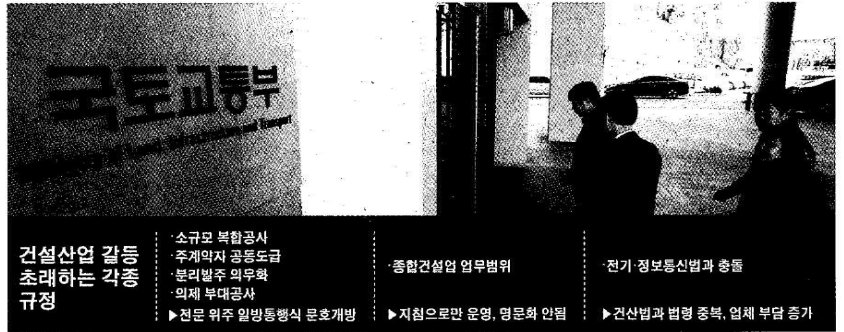
한을 았었다. 등록기준만 채우면 종합이든 전문이든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399개사가, 전문에서 종합으로 704개사가 서로 뛰어들었다. 여기까지는 쌍방향 통행으로 공정한 예외의 규칙이다.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의무화, 의제(擬制) 부대공사 등은 전문 위주의 일방통행식 문호개방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이 해야 할 ‘복합공사’분야에 소규모란 말을 앞세워 전문에만 길을 터줬다. 불공정한 예외의 규정이다. 더구나 ‘소규모’란 말은 너무 모호해서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확대(3억원~10억원) 논란은 예고된 사태였다.

A건설사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제



국토교통부
 <상> 열악길등 축설시간 국토부
 <중> 오락가락 건설산업정책
 <하> 법기본개념으로 돌아가야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의무화 의제 부대공사
 > 전문 위주 일방통행식 문호개방

종합건설업 업무범위
 > 지침으로만 운영, 명문화 안됨
 전기 정보통신업과 충돌
 > 건산법과 법령 중복, 업역 부담 증가

로 인해 10억원 미만 공사 시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부대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으로 복잡하게 잘게 쪼개진다”며 “영업범위를 단계적으로 드는 게 국토부 생각이려면 10억원 미만 시장에서 종합-전문 간 완전 경쟁을 시켜야 공정한 게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10억원 미만 시장에서 종합-전문 간 등록기준을 최소한으로 똑같이 낮춰야 한다. 하도급 규제도 이 구간에 서 전면적으로 풀어야 현실성이 있다.

또 종합건설업의 업무범위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업역 분쟁의 소지도 차단해야 한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것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종별 업무범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의 건설업법은 강구조물공사의 업무범위에 놓이시설이나 무대장치, 도로 방음벽 공사, 입체 주차장 살비 공사 등까지 포함한다. 반면 한국 건산법에 따르면 공사 업무범위에 치산(池山) 공사, 임도(林道) 공사, 사방 사업, 사태 방지 공사 등이 없어서 산림토목공사(산림청)와 업역분쟁을 초래한다.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련 공사’로 정의된 부대공사 역시 모호한 정의로 업역 갈등을 부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등도 발주자의 선택권보다 불필요한 업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종합-전문 간 업역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기, 정보통신 등 건산법 테두리를 벗어난 독립적인 개별 법령과도 수시로 충돌

한다. 이는 업계 부담으로 직결된다. 건산법상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응찰이 가능했던 공사가 새 법령이 정한 기준까지 맞춰야 한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 간 이기주의의 결합해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보다는 기시적인 단기적 이익에 편중되고 점진적인 규제개선 위주의 논의만 진행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법건설 분야 시공영역은 건산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전직 임원은 “국토부가 때 쓰면 들어주는 식으로 불공정한 예외 규정을 늘려가면서 건산법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각종 규제의 정의도 명확히 해서 업역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은

“건산법 등 관련 법령, 역할 명확히 부여해야”

등록기준·입찰방식·담합·하도급 등 총괄...한계 있어 발주기관 역량 키우고, 친원일발 발주방식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건산법 등 관련 법령에 ‘제 이름 찾아주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산법은 등록기준 등 생산체계의 틀만 규정해두고, 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에,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법에, 담합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으로 각각 나눠 법령에 걸맞은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전직 임원은 “건산법이 등록기준과 입찰방식, 담합, 하도급 문제까지 총괄하는 체계로는 건설산업의 진흥도, 제대로 된 규율(규제)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도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발주역량을 키워야 한다. 책임회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청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론 친원일발발주방식을 피할 수 없다.

발주기관의 발주역량과 책임의식, 기술력 향상을 토대로 다양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업종 간 영업제한을 없애

고 완전 자율경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전문, 세부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없애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본의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없이 28개 업종만 있다. 이 중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성격에 띠고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의 성격을 갖는다. 등록기준은 해당업종 진입의 최소요건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무관하다.

영업범위 폐지는 일정 금액기준(예를 들면 10억원 미만 공사)의 시장에서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범위가 없는 ‘문턱 제로(0)’ 지대를 만들어 완전 자율경쟁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올려 100% 경쟁체제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업종 간 영업제한이 무너지면 하도급 규제도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영업제한을 타내고 하도급 규제를 그리로 뒤선 제도개선 효과를 볼 수 없

다”며 “종합-종합 간 하도급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품질생산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래 건설수요에 걸맞은 건설산업 생산체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우철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전문 간 연구부,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확대 등은 그야말로 공과자 중심적 시각”이라며 “제도의 틀을 정해놓지 말고 미래 건설산업이 어떤 생산체계를 원 하는지에 따라 유연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는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내수용 생산체계’로는 해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회환가능성을 갖춘 국내 생산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업제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혹되는 그동안 폐지 주장이 현실 설득력이 있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62년이 걸렸다”며 “영업범위 제한도 발주자의 역량 강화, 성숙한 건설문화와 확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차근차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종합은 대기업? 전문은 중소기업?... 종합업체 98.6%가 중소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연히 보통의 국민은 원도급을 받는 종합건설업체는 규모가 크고,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는 규모가 작고 영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상도 그렇까. 통계청의 2012년 건설업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직원수별로 중소업체를 분류한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상시직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의 87.8%인 8729개사이고 전문건설업체는 94%인 3만6790개사다. 상시직원수 50~300인 미만의 중기업은 종합이 10.8%인 1072개사이고 전문이 5.2%인 2038개사다. 300인 이상의 대

기업은 종합이 1.4%인 140개사, 전문이 0.8%인 298개사다.

보통의 국민 생각과는 달리 종합도 98.6%가 중소기업인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문제에 직면해 종합건설업체가 중·소형 종합건설업체들의 물량을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혁용기자 hykwon@

소송에 머드는 건설산업

영업 범위 모호... 종합-전문 다툼 초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영업범위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양 업계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 영업범위를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 역할을 못한 결과 입찰이 나오면 종합과 전문이 서로 자기 입찰이라고 소송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대공사 판단 기준은 국토부 발주요령에만 있어 지자체, 자의적 판단 ‘혼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건설공사 영업범위의 원칙은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종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공사라고 해도 주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이 주공종에 따르면 부대공사일 경우 이를 주공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대공사 판단 기준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담겨 있다. 건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지 않고 있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는 하수암송관로 이설공사를,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했다가 종합건설업체가 반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해 다시 종합공사로 변경, 재공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군산시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했다가 전문업계의 이의제기로 전문공사로 변경 공고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방조제 개보수공사

57건을 석공사와 이에 딸린 부대공사로 판단해 모두 전문공사로 발주했다. 종합건설업계가 이는 부대공사라 아닌 복합공사로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 역할을 못한 결과 입찰이 나오면 종합과 전문이 서로 자기 입찰이라고 소송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공명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다 결국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두고 서로 자기 공사라고 다투는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관련 규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현재 부대공사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요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건산법에서 규정하지 않다 보니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공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발주요령을 들고 찾아야겠다 지자체 담당자는 이게 뭐냐고 반문할 정도”라며 “시행규칙 등에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모호한 기준이 혼란스러운 발주와 종합과 전문업체 간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산법 변천사는 종합건설사 물량을 전문건설사로 이전해준 역사”라고 꼬집었다.

영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적업에 의원입법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종합건설사 물량을 조금씩 전문건설사로 넘겨주는 개정작업만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종합과 전문, 원도급과 하도급과 같은 건산법의 근간이 모호해지면서 업계 간 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아하! 그렇구나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 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납부의무

1. 사건 개요

발주기관은 이 사건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A가,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B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B가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C가 마무리 공사를 담당하였고, 발주기관은 C와 4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C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C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 상대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 최종 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 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

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 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 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 상대방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발주기관과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는 발주기관에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차수별 계약 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경우 최종 차수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법무법인 동인)

